

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9. 30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96호로 2024년 9월 13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
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서비스
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
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,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라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마.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바.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직업안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9.19.~2024.9.24.) 결과: 의견 없음

※ 부서의견(일자리경제과)

영등포구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표 및 포괄 조례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)가 제정('24.9.12.)되어 영등포구의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따라서 개별 노동자 직군에 관한 조례를 중복·제정¹⁾하여 조례의 수·양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심사 속고가 필요하며,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후속 업무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부서에서 표명함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사근로자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준용하여 정의함.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‘가사근로자’의 범위를 ‘가사노동자’ 뿐만 아니라 ‘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’까지 확대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

1) 노동(근로)기본조례 및 가사노동자(근로자)조례 동시 제정 서울시 자치구 현황: 성북구, 강서구

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5조(기본계획)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'3년마다' 수립·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. 아울러 해당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함.
- 안 제6조(시행계획)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 이를 근거로 중·단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안 제8조(지원사업)부터 안 제9조(위탁)까지는 ▲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▲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원 ▲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,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, 관련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과거 가사노동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가족을 위한 금전적인 대가성이 없는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노동이 재평가되고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형태로 변화하였음. 이러

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「가사근로자법」(시행. '22.6.16.)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- 본 조례안의 입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, 「가사근로자법」 제3조제2항2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3)에 근거하여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할 수 있음.
- 한편, 「가사근로자법」에서 정의하고 있는 ‘가사근로자’는 동법 제7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)4)에 따라 인증을 받은 ‘가사서비스 제공기관’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지만, 본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위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‘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’까지 아울러 정의를 확대한다는 데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2) 제3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
2.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원
3.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,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**2. 주민의 복지증진**

4) 제7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)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※참고자료

법규명	자치단체
「 <u>가사노동자</u>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	- 경기도, 전라남도 무안군, 부산광역시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성북구, 전라남도, 충청남도
「 <u>가사근로자</u>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	- 광주광역시, 김해시, 남동구, 대구광역시, 동두천시, 서울특별시 강서구·동작구·양천구·용산구, 성남시, 울산광역시, 인천광역시

- 다만, 제정안 제5조제2항을 살펴보면, 기본계획을 우리 구(區) 노동자 권리 기본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6조5)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, 수립 주기(제정안: 3년,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: 5년)가 상이한 바 추후 기본계획 수립 시 수립 주기를 맞출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짐.

5) 제6조(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
2.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원
3.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,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)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2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주민의 복지증진

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제6조(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